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_별지

2021. 08

영업용자동차보험

1. 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영업용자동차보험
3. 보험 가입대상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4.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다.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5.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 1년만기
나. 보험료납입주기
일시납, 2회납, 4회납, 6회납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특약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대여사업자추가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건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렌트카 임시 탁송 운전 특별약관	시간단위 렌터카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9. 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각 사항의 경우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1) 단체할인·할증 적용 대상 계약 중

①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서로 다른 보험료 적용기간에 걸치는 단기계약

② 동일보험료 적용기간 말일까지의 보험기간으로 하는 단기계약

③ 기존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낮은 적용률로 체결하는 계약

- 라.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보험의 인수심사,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 마. 시간단위 렌터카 특별약관 가입계약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동 특별약관 미가입 계약의 대인배상1 연간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 종료 후에 연간 영수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가 납입 또는 환입 정산한다.